

답변서

사건번호 : 2001재누15

원고 : 임그루

피고 : 대법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주식회사 kt사장

◆,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상대방용 사본 3부 첨부

2004년 4월30일

임그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1.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구법 제422조)4항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법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보면 현저하게 알 수가 있는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사법고시에 합격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무능력자는 아닌 판사님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피고의 주장대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를 이유로 한다면 확정을 받기위해 재판에 관여한 판사님들을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재심이유가 이것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면 법관은 고도의 신분이 보장되어 어떠한 결과가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여기에는 대법원 소부에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심리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이유는 재심답변서에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9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라는 업무제안을 해 부당한 심사에 정당하게 항의 해 회사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개선됐고 이 것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괴씸죄로 징계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여기에 관한 건 전혀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10항

‘재심에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앞에 선고한 확정판결. 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나 외국판결, 중재판결의 기관력에 저촉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항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2. 피고추가 해 주세요.

대법원에서도 직무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해 피해를 보았으므로 대법원장님도 피고를 추가시켜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통지에 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면 재심피고에 대법원장님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재심답변서에 설명했습니다.

맺음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규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관의 소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 있게 재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기각판결 받고서는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엉터리로 재판하느냐고 하기에 설명을 해도 믿지도 않고 또, 그 많은 증거서류들을 읽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여 책으로 편집하여 전국의 대학교 신문사 및 여러군데의 언론사에 보냈고 신문광고도 몇 번 했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각국마다 책이 몇 권씩 돌려가며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아 오해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괴심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무단조퇴 무단결근처리로 2003년 5월30일자로 해고되어 진실을 밝히려고 지금은 서울행정법원 사건 ‘2004고합10012’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과 비슷하게 징계처리되어 바르게 재판되어 복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건 대법원 확정판결문 받아보기 전 까지는 절대로 대법원에서는 엉터리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기에 잘 참고 퇴근 후에 조금의 시간은 대학원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대법원판결문 받고는 하고픈 의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회사상관님과 동료들에게 더 따돌림도 당했고요. 대학원학점은 다 점수를 받았지만 마지막 시험과 논문은 쓰지 않아 졸업은 안 되고 수료상태입니다.

부족한사람이라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정당하게 해야지 희망과 하고픈 의욕이 생기지 권력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힘으로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지칩니다. 바르게 재판되어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맘입니다. 이 외는 그동안에 법원에 제출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참고자료(붙임)

행정법원 소장내용 3장

인터넷서점에 올린 홍보 글 1장

2004. 4.30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소장

원고 : 임그루 휴대폰 016-878-2177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한통사택 a동 103호

피고 :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화번호 02-3273-2325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 (주)KT 대표이사 이용경
우편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부당한 해고 철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 1.부당해고 철회하고
 - 2.그동안의 월급 보상하라
 -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심절차를 거쳤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징계철회요구 : 사건 2003부해136(기각판정)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재심요구 : 사건 2003부해722(기각판정)

(재심판정서를 3월 25일 송달받았습니다.)

명백하게 부당한 판정이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년 6월 15일 회사에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당하여 2002년 11월 3일까지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많이 아픈데도 제 의사와 다르게 강제로 치료를 종결시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아파서 육체를 움직이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 2003년 2월 4일까지 제가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냈습니다.

또,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은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보건소의 진단서가 유용하여 의료기기 회사 메디코아에 연락하여 가까운 곳의 해당되는 병원 알아보니 동해에 종합병원에 ir2000이라는 장비가 지급되었다기에 진찰받으려 갈려고 연락해보니 병원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기에 이러한 사정을 과장님께 예기를 하니 과장님은 휴직사규를 보여주시며 본인이 원하면 진단서가 없이도 휴직을 낼 수가 있다고 하시기에 낼려고 했으나 다른국 몇 군데 연락해 보시더니 안된다고 하여 몸이 아픈데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는지 국장님께서 치료받는 병원의 진단서로 휴직신청하라고 하시기에 승인이 되어 신청했으나 포항국에서는 사규에 어긋난다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꾀병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몸도 더 아프고 괴로워 휴직을 할려고 제가 치료받는 의사님께도 이러한 사정을 예기하고 해당되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도 했는데 진찰하러 갈려고 연락해보면 취급을 안 한다고 하고 또, 메디코아 회사에 연락하여 안동병원을 알았는데 연락해보면 취급을 안한다고 하고 또 큰병원에 연락도 여러군데 했는데 취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답답하여 제가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엑스레이사진 통증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의료원에 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경북, 강원도지역에는 회사사규에 해당되는 병원에서는 취급을 안한다는 것을 알았고. 신경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병원은 몇군데는 취급을 합니다.

+ 참고

머리, 목, 어깨부분이 아픈데 고통스러운 머리부분은 적외선통증검사기(ir2000)라는 신경
윗과 의료장비가 있어야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예기해도 사규가 그렇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휴직도 받지 않고, 괴씸죄로 무단조퇴, 무단결근 처리하여 해고 한다는 것은 당하는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억울 합니다. 재판장님 철회하여 주십시오.

†. 참고

몸이 아파서 국장님과 상담했습니다. 산재에서 연락오는 것 보고 결정한다고 명퇴를 신청하면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 참고

이러한 모든 것이 ‘사건 2001재누15’라는 내용을 ‘폭로’책으로 편집한 괴씸죄로 그렇습니다. 대구본부 해고 이유에도 일부분 회사를 읊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랬다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시키고 추후에 증명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 호증의 1내지 2 노동위원회 결정서(중앙, 경북지방), 총17장
2. 갑제 2 호증 회사휴직 사규, 2장

첩 부 서 류

• 위의 모든 것, 소장사본 2부

2004. 4. 3
임 그 루

서울행정법원 귀중